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최민희·김승원·김용만

김 현 · 김현정 · 노종면

박민규 • 이원택 • 이훈기

정동영 • 조계원 • 조인철

황정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.

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,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,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.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·감독이 필수적임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, 핵물질,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07조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의 제목 중 "절차"를 "절차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, 핵물질,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통제 현황 및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7조(수출입의 <u>절차</u>) (생 략)	제107조(수출입의 <u>절차 등</u>) <u>①</u>
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 또
	는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에
	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
	자로 및 관계시설, 핵물질, 방
	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
	입통제 현황 및 실적을 매년
	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
	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
	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